

전주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18가합46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이서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찬두, 최민중, 양성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온성욱, 추길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백민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D, E 각 배당절차 사건에서 소외 C이 가지는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2017. 12.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고, C은 'G'이라는 상호로 광고업 등을 영위하면서 소외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주택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11. 4.부터 2015. 12. 7.까지 사이에 C에게 502,304,250원 상당의 현수막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채무 중 원고가 2015. 10. 16.부터 공급한 물품에 관한 부분을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 C, 이 사건 추진위원회, I(이하 'C 측'이라 한다)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502,304,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2156호).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같은 법원 2016머8415호), 2016. 10. 17. 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C 측 사이에 'C 측은 연대하여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지급 금원에 C은 2억 원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I는 각 1억 원의 위약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C은 2020. 1. 29., 위 사건에서 C 측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위 조정을 성립시킨 법무법인 대연에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사건에서 작성된 조정조서에 민사소송법상 준재심사유(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재가합1012호, 이하 위 조정조서를

‘준재심대상 조정조서’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21. 8. 18. 준재심대상 조정조서 중 원고와 C 사이에 관한 부분에 원고 주장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는 한편, 2015. 12. 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502,304,2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가 C으로부터 2015. 12. 21.부터 2016. 3. 28.까지 사이에 합계 117,513,000원을, 연대보증인 I로부터 2016. 4. 5.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합계 144,724,500원을 각 지급받고, 뒤에서 보는 전주지방법원 D, E의 배당절차에 추심권자로 참가하여 합계 54,184,317원을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C은 원고에게 185,882,433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2.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등

1) C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772,438,648원 상당의 광고대행 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6가합4395호). 위 법원은 2017. 1. 20.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C에게 2,772,438,648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C 선행판결’이라 한다).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체결하였던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이 2016. 12. 31.경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치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7. 4. 6. 준재심대상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예치금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7타채6100호).

J은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내지 압류 등이 경합되자, 2017. 11. 27.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1212호로 6,194,794,723원을, 2017. 11. 28.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11253호로 2,456,983원을 각 집행공탁하였다.

3) 위 각 공탁금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D, E로 각 배당절차(이하 위 D 사건의 배당절차를 ‘이 사건

제1배당절차', 위 E 사건의 배당절차를 '이 사건 제2배당절차'라 하고, 위 각 배당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C은 이 사건 C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판결의 원리금 3,132,475,886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4) C은 2017. 12. 18. 피고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지급받게 될 배당금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는 C의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바,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의 액수를 위 채권금액인 3,132,475,886원으로 기재하였다. C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배당절차의 배당법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7. 12. 22. 위 배당법원에 도달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관련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 관하여 2018. 4.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제1배당절차의 배당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6,195,604,120원 중 810,169,414원을 C의 양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1배당표'라 한다)를, 이 사건 제2배당절차의 배당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805,669원 중 236,120원을 C의 양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2배당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제2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들 중 K, L, M, N, O(이하 'K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와 C의 배우자 P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5. 4. 피고와 P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관련 배당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9. 9. 5., P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대행 수수료는 합계 1,634,379,120원이고, C은 그중 1,301,086,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C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광고대행 수수료는 333,292,620원인바, 위 채권을 기초로 형성된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제1배당절차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권금액은 위 333,292,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C 선행판결에 따라 2016. 12. 3.부터 이 사건 제1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4.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0,402,359원의 합계액인 403,694,979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10,169,414원을 403,694,979원으로 경정하고, 감액된 406,474,435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K 등에 대한 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8가합1987호).

4) 위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판결 부분에 관하여 K 등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0. 11. 26., 피고의 배당액을 위에서 본 실제 채권금액 403,694,979원에 맞게 다시 산정하면 104,409,846원¹⁾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10,169,414원을 104,409,846원으로 감액하고, 피고에 대해 감소된 배당액을 K 등의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나12744호].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하여 위 계약 무렵에도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1) C의 재산 상태

가) 적극재산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광고대행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채권’이라 한다)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채권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C의 종전 신고된 채권금액(3,132,475,886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실제 채권액(403,694,979원)에 비례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합계 104,645,966원(= 이 사건 제1배당절차 104,409,846원 + 이 사건 제2배당절차 236,120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결국 C의 이 사건 수수료채권은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의 가액인 104,645,966원의 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수수료채권은 위 104,645,966원 상당만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C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C이 이 사건 수수료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선행판결 이후 추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각 배당절차는 J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약 62억 원 상당의 예치금을 공탁함에 따라 개시된 것인바, C이 위 각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지급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극재산

위에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원금 240,066,750원2), Q조합(이하 ‘Q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562,881,828원,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체납액 262,420원 등 합계 803,210,998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C의 채무초과 상태

위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액수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복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은 ‘G’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는 수입 외에 별도의 소득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업체의 2017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세액은 (-)1,363,062원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위 사업체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큰 상태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직후인 2017. 12. 30. 위 사업체를 폐업한 점,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C의 자산상태가 점차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성 및 C의 사해의사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이나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실상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사업체(G)의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로 재산 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 C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점, ③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직후인 2017. 12. 30. 자로 위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015. 6. 3. 118,500,000원을, 2015. 8. 4. 78,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7. 26. C의 Q조합에 대한 566,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의 변제 또는 C이 Q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C에 대하여 갖게 될 구상금채권의 담보로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3. Q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 중 118,500,000원을, 2015. 8. 4. Q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 중 78,000,000원을 각 대출일 당일에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가 2017. 7. 26. C의 Q조합에 대한 566,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위 Q조합에 자신 소유의

김제시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주장의 위 대여원리금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가 C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피고는 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C에게 피고 주장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C의 Q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그 상환기일이 2019. 7. 26.이고,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까지 위 Q조합에 매달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른 피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주장의 대여원리금채권 등이 존재하였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C이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농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C이 운영하던 사업체와는 관계가 없고, 위 각 배당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C이 원고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바,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 피고는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를 수년간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C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C이 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자 C에게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직후 위 사업체를 폐업한 점에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취소의 범위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은 3,132,475,886원이나, 이 사건 각 배당절차 및 관련 배당이의 소송을 거쳐 확정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합계 104,645,96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104,645,966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272,692,074원³⁾으로,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의 가액을 상회하고 있음이 계산상 분명한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배당금채권을 추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 현, 판사 허윤범, 판사 김민재

1) 종전 배당액 810,169,414원 × 실제 채권액 403,694,979원 ÷ 종전 채권신고액 3,132,475,886원(원 미만 반올림).

2) 2015. 12. 7. 기준 물품대금 502,304,250원 - 원고가 C으로부터 2015. 12. 21.부터 2016. 3. 28.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물품대금 합계 117,513,000원 - 원고가 연대보증인 I으로부터 2016. 4. 5.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물품대금 합계 144,724,500원(을 제10호증).

3) 원금 185,882,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6,809,641원[= 59,431,451원{185,882,433원 × 연 6% × 1,945일(2016. 4. 22.부터 2021. 8. 18.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 + 27,378,190원{185,882,433원 × 연 12% × 448일(2021. 8. 19.부터 2022. 11.

9.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으로,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